

11.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개정령(안)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8-9호 1998. 12. 17

개 정 이 유

국민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진 국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관한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, 기타 현행 기준상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함.

주요개정내용

- 가. 현재 생활편익시설로서 주택단지내 설치가능한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환경 위해시설(단란주점)등을 제외한 근린생활시설로 그 범위를 확대함.
- 나. 2이상의 주택단지 건설시 하나의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진입도로 폭을 모든 단지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훈령으로 운영하던 것을 법령에 명시하여 규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다. 현재 비상급수시설 설치대상을 20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서 100세대이상으로 완화하고, 1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는 비상급수시설로서 지하양수시설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2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유치원을, 500세대 이상에는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던 시설기준을 폐지하여 앞으로는 단지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.
- 마. 3천세대이상의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던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확보 규정을 폐지하여 주택건설시 민간의 과도한 부담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함.

주택회보